

의안번호	2215572
의 퇴 인	박홍배의원
회 답 일	2026.3.24.
추계번호	25B55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2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과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104조의 2(근로자 추정) 신설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함(제1항) 근로감독관은 노무제공자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한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는 자(이하 “노무수령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3	안 제11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항) 5.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2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	• 미대상 － 개정안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근로감독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104조의 2(근로자 추정) 신설	×	• 미첨부(제1항 및 제3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	• 미대상(제2항) －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노무제공자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이는 감독관이 노무수령자가 보유한 계약서, 출퇴근정보 등 노동자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116조(과 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은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임
 -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단 없이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수령자가 이를 반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성 부정이 부정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주로서 근로자 추정을 반증해야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근로자 추정에 대한 반증 건수와 이로 인한 재정소요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수와 자문위원회의 규모 및 구성, 회의 개최 횟수 등을 검토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